

의안번호	
의 퇴 인	김선민의원
회 답 일	2025.05.23.
추계번호	25C2582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정부의 위원 정수를 2인 증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억 6,500만원 씩 향후 5년간 총 8억 2,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안 제23조(조정부)	165	165	165	165	165	826	16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(조정부)	○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,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음(제1항) - (현행) 5명 - (개정) 7명 ※ 조정부 추가인원은 제3호(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)으로 함(제3항)	의무규정

[표 2] 조정부 위원 수와 구성 비교

구분	현행	개정안
위원 수	5명	(확대) 7명
위원 구성	- 판·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-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-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-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1명	- 판·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-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-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-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1명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3조(조정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 - 신규 조정부 위원은 2026년 1월에 일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‘조정부’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경우 증가하는 회의 수당임
 - 개정안에서 민간위원 2인을 조정부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산출하며, 회의 건수와 위원 수에 회의 수당을 곱하여 추계
 - 향후 의료분쟁조정 건수에 따라 조정부 회의 개최 횟수도 변경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가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최근 3년(2022~2024년) 조정부 회의 개최 실적을 적용함
 - (회의 건수)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, 조정부 회의는 최근 3년(2022~2024년) 연평균 533회 개최되었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533회가 유

지되는 것으로 가정

- 회의 수당은 최근 3년(2022~2024년) 조정부 위원 1인 건당 평균 지급액인 15.5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¹⁾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안 제23조(조정부)	165	165	165	165	165	826	16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

1) 조정부 회의는 하루에 1건 이상 개최될 수 있으며, 동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정부 위원 과반수가 참석할 경우 의결할 수 있음.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, 하루 2건의 조정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이 2명씩 개별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므로 전체 회의에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. 따라서 본 추계서에서는 회의 건수에 정해진 회의수당 단가를 곱하지 않고 과거 1인당 건당 평균 지급액을 준용함